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의 금지 등〉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1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 처벌의 특례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맹성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7.
3. 회 부 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오프

라인을 불문하고 압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의 처벌요건 중 장소적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취득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려는 것임.

현행	맹성규의원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3. (생략) 4. (암표매매) <u>홍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u> <u>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u>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u><신 설></u> ③ (생략)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요금</u> 이 정하여진 <u>입장권·관람권·승차권·승선권 또는 그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u> <u>자신이 취득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u>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경기장 등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매 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¹⁾.

개정안은 암표매매의 장소적 제한을 삭제하고 상습성·영업성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장소를 불문하고 상습적·영업적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상습적·영업적 암표매매 행위는 더 이상 경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봄²⁾. 특히, 온라인을 통한 암표매매의 경우 그 특성상 현장적발이 불가능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장의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1)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4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홍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 및 중개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행위자 확인을 위해서는 수사관서의 장의 허가를 통한 통신자료제공 요청³⁾을 필요로 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온라인을 통한 상습적·영업적 압표 매매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장소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하는 압표 매매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일회성 압표매매 행위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온라인상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압표매매 행위는 다른 개별 법률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철도사업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

3)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⁵⁾, 「공연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345

4)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 참고자료

<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 처벌의 특례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2(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제8조에 따른 납부 방법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